

대전지방법원 2024. 6. 26 선고 2024가단3395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6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2022. 1. 31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9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
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박우근

별지1

부동산의 표시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대전유성구 , 주택 제11층 호

(도로명 주소)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1. 건물의 번호 :

구조 및 면적 : 철근콘크리트구조 19.8039㎡

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대전유성구 :대 2692.1-4 :대 2692.1

대지권의 종류: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: 2692.1분의 3.9380

별지2

청 구 원 인

1.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

원고와 피고는 2021. 01월29일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인 대전 유성구 C 도시형생활주택 제11층 D 호에 임대차보증금 3,000,000 (삼백만원), 임대차기간 2021. 01. 31.부터 2022. 01. 30.까지, 월 임대료 370,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.

2. 월 임료 미납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

그러나 피고는 2021.01.31. 입주후 첫 달 선불만 입금하고 두 번째 달부터 월 임대료는 물론, 가스, 전기, 관리비를 연체하고있어서, 임대차계약서 제 3조 에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, 원고는 이 건 소장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합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 임대료 미납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건물을 명도 하여야 함은 물론 2021.10.31.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370,0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밀린 월세 및 관리비와, 원고는 이를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